

충남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3. 2.22.

1차 개정 2015. 3. 12.

2차 개정 2015. 12.14.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국사학과(이하 “학과”라고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논문제출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학과에서 추가로 정한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2008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

1. 석사과정 학생은 학과에서 실시하는 한문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2. 한문시험 응시자는 석사과정에 입학 후 언제든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3. 한문시험 출제범위는 사서집주로 한다.
4. 한문시험에서 60% 이상의 점수를 득한 경우에 합격으로 한다.
5. 학기 중 설강된 원전강독 I, 원전강독 II 등의 강의를 이수하거나, 한자 전문 교육 기관에서 1년 이상 한문수업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한문시험을 면제한다. (사이버 강의 제외). (개정 2015.12.14.)

제4조(논문제출자격시험) ①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시험과목은 4과목 이상으로 한다.

- ② 응시자는 모든 과목에 응시하여 시험을 치러야 한다.
- ③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시험문제는 별도로 출제한다.
- ④ 전공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⑤ 시험의 결과는 5년간 학과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어능력 기준) ①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2015. 3.12.)

1. TEPS 500점 이상

2. TOEIC 600점 이상
3. TOEFL(CBT) 193점 이상
4. TOEFL(iBT) 69점 이상
5. JLPT 2급 이상
6. JPT 600점 이상
7. 한자능력검정시험 1급 이상
8.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센터에서 영어 관련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9. 충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공자학원)에서 중국어 관련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제6조(논문 계획 및 예비 발표) 없음

제7조(학술지 게재 의무조건) ① 박사학위과정은 학과가 인정한 학술지에 3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다.

1. 주저자만 인정한다.
2.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논문지도위원회) ①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둔다.

- ② 수료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한 학생의 지도교수는 3인 이상의 위원을 학과 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 학과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③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9조(예외) ①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0조(시행세칙의 개정) ①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현재의 학과 기준과 동일한 경우 이전 입학자부터 적용 가능)

부 칙 (2015. 3.12.)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 12.14.)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 세칙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원에 의해 종전 시행세칙을 따를 수 있다.